

# 감정평가 과업지시서

[ 흥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]

2015. 12월

서 대 문 구 청

## 1. 개요

1. 과업명 : 홍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종후재산 감정평가 용역
2. 과업의 근거 :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 제5항
3. 과업 범위 :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 등을 위한 종후재산 감정평가
  - 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
4. 감정평가 기준일 : 분양신청기간 만료일
5. 과업 기간 :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
6. 과업 결과물
  - ① 과업기간 완료일 전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감정평가서 5부 및 CD 2개 제출.
  - ② 대상물건의 특수성, 물량의 과다,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울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그 정당한 사유를 명기한 문서로 기한 연장 요청가능
  - ③ 감정평가서 제출 시 감정평가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.

7. 과업수수료 : 「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(국토해양부공고제 2014-1441(2014.11.17))」에 의거하여 산정된 과업수수료를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출.

## II. 과업수행 일반지침

1.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부동산 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」 기타 감정평가 및 도시정비 관련 법률 및 본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.
2.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.
3.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 III. 기 타

1. 본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에 이행한다.